

목 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3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4
가. 권유기간	4
나. 피권유자의 범위	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5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5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6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7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7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7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7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8
□ 재무제표의 승인	8
□ 감사의 선임	8
확인서	9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0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11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1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3 월 11 일

권 유 자:	성 명: 이규성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0길 23, 성지라빌레뜨 A동 203호 전화번호: 010-9023-5665
작 성 자:	성 명: 허권 부서 및 직위: 주식회사 헤이홀더 대표이사 전화번호: 010-3473-328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이규성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5년 03월 10일	라. 주주총회일	2025년 03월 31일
마. 권유 시작일	2025년 03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가치 제고 및 독립적인 감사 선임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주식회사 헤이홀더
(인터넷 주소)	-모바일 주소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us/app/헤이홀더/id6443965513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규성	보통주	1,673	0.01	주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	-	-	-	-	-	-
계		-	0	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규성	보통주	1,673	주주	본인	-
허권 (헤이홀더)	보통주	6,000	주주	대리인	-
박형렬 (헤이홀더)	보통주	0	없음	대리인	-
신학진 (헤이홀더)	보통주	0	없음	대리인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헤이홀더	법인	보통주	0	-	-	-
(주)로코모티브	법인	보통주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헤이홀더	허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길2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를 통한 위임장 확보	010-3473-3288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로코모티브	이태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1길 31, 1101호(서울숲 M타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를 통한 위임장 확보	02-3408-820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5년 03월 10일	2025년 03월 14일	2025년 03월 30일	2025년 03월 3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티플렉스의 재무제표와 주가 추이를 보면 동사의 가치는 매우 저평가된 상태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플렉스의 PBR은 현재 0.5 미만 수준으로, 회사의 내재가치에 비해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저는 회사에 유보된 현금이 부족하다는 점과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김영국과 그의 숙부인 김태수는 지난해 합계 약 30억원을 급여로 수령하였습니다. 같은 해 회사는 22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을 감안한다면, 회사의 실적이 안좋아진 상황에서 김영국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급여만 현실화했었다더라도 회사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한 보수의 지급은 결국 시장이 회사의 자원 배분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으며, 이는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에 우호적인 감사 선임**을 추진하여 주주권익을 대표하고 경영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임원보수규정 신설 승인의 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사들의 급여액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5. 3. 14. ~ 2025. 3. 30.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식회사 헤이홀더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모바일 주소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us/app/헤이홀더/id6443965513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헤이홀더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주소	-모바일 주소 어플리케이션 '헤이홀더'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us/app/헤이홀더/id6443965513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전자위임장 접수처 휴대폰으로 아래 주소에 접속 혹은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헤이홀더'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 위임장 제출 가능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eyholder.app (IOS) https://apps.apple.com/us/app/헤이홀더/id6443965513 2. 서면위임장 접수처 - 우편접수처: (우 0477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1길 31, 1101호(서울숲M타워) (주)로코모티브 전화번호: 02-3408-8203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전자위임이 불가능한 미성년 자녀의 의결권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행사 가능 [1] 법정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 위임장에 자녀의 성명 옆 '법정대리인 000'을 기재하고 서명 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 위임장에 자녀의 성명 옆 '법정대리인 000'을 기재하고 서명 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가

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주식회사 로코모티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1길 31, 1101호, (우 04778)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5년 3월 31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로 75 (목내동, (주)티플렉스) 본사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5년 3월 21일 9시 ~ 2025년 3월 30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ksd.or.kr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참고서류)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제1호 의안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의안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의안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1-2-1호 의안 현금배당 25원 승인의 건
제1-2-2호 의안 현금배당 100원 승인의 건(주주제안)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구희찬	1965년 06월	-	주주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구희찬	티엠파트너스 대표이사	2003~2017	(주)티플렉스엠텍 대표이사 (주)티플렉스 부사장(CFO) / 관리총괄	-
		2017~현재	(주)티엠파트너스 대표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구희찬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주주제안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5 년 2 월 11 일

보고자 구 희 찬 (서명  탈인)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참고서류)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참고서류)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임원보수규정 신설 승인의 건(주주제안)

나. 임원보수규정 제안(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티플렉스(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감사, 미등기 임원 및 비상근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는 본 규정에 반하여 임원과 임원의 보수에 관한 계약(이하 “임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으며, 본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주주총회나 이사회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원”이란 회사 등기부예의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또는 이에 준하거나 이상의 지위를 가진 자(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포함)를 의미한다.

“연봉”이란 당해 임원이 회사와 체결한 개별 임원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을 의미한다.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보수”란 연봉, 성과급 및 기타 수당의 합산을 의미한다.

“기본연봉금액”이란 임원이 회사와 체결한 임원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과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4조(연봉) ① 임원의 기본연봉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원의 연봉계약은 매년 1년 단위(1. 1. ~ 12. 31.)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도에 연봉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한도액이 변경되는 경우 소급하여 적용한다. 연도 중에 임명되거나 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계약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본다.

제5조(보수한도) ① 등기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미등기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전항의 보수한도는 이사와 감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정하되, 이사의 경우 각 이사의 보수한도 또는 보수

를 개별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체 이사의 보수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배당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연봉월액 지급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연봉월액은 매월 임원 계약에 따른 일자에 지급한다.

제7조(성과급) ① 회사는 필요시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임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임원의 성과급은 재임 중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하되, 본 규정에 따른 “기본연봉금액”에 담당업무의 성질·중요도·책임의 경중 및 회사의 재무상황과 동종업계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승인하는 성과급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위 임원의 성과급 지급율은 대표이사 승인에 의한 임원 개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경영계약에 의거한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세금)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되어야 하는 제반 세금 및 공과금은 본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보수를 임원에게 지급하기 전에 원천 징수한다.

제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 즉시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범위)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는 본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